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1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1
IV. 감사실시 경과	2
1. 감사반 편성	2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V. 증인 및 참고인 현황	5
VI. 주요감사 실시사항	8
1. 성평등가족부	8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8
V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1. 성평등가족부	29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9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II. 감사기간

- 2025. 11. 4(화), 11. 5(수) [2일간]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성평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개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개 기관)
총 7개 기관	

IV.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함.
- 감사반 : 17인

구 분	교섭단체(정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국민의힘	이 인 선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 한 규 김 남 희 박 홍 배 서 영 교 이 연 희 이 주 희 임 미 애 장 철 민 전 진 숙 채 현 일	간 사
	국민의힘	조 은 희 서 명 옥 서 범 수 이 달 희 한 지 아	간 사
	조국혁신당	정 춘 생	

○ 사무보조자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사무보조자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심의관	김 태 규	
	행정실장	김 월 래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이 보 립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김 혜 리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임 금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지 수 현	
	성평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김 다 원	
	행정관	김 안 희	
	행정관	이 선 호	
	주무관	권 영 미	
	의정기록 주무관	권 오 정 손 선 락 홍 미 지	
	정 책 연 구 위 원	김 혜 연 안 경 희	더불어민주당 (4급상당) 국민의힘 (2급상당)

2.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
11. 4(화) 10:00	○ 성평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위원회 회 의 실 (본관 550호)	위원 전원
11. 5(수) 10:00	○ 현장시찰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꿈드림)	위원 전원

V.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증인 현황

가. 성평등가족부 : 13인

연번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장 관	원민경	2025.11.4.(화) 11:00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2	차 관	정구창	〃	〃	
3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	〃	
4	성평등정책실장 직무대리 겸 성평등정책관	조민경	〃	〃	직무 대리
5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	〃	
6	대변인	최문선	〃	〃	
7	정책기획관	김권영	〃	〃	
8	고용평등정책관	이정현	〃	〃	직무 대리 (추가)
9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	〃	
10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	〃	
11	가족정책관	윤세진	〃	〃	직무 대리
12	감사인사담당관	이정연	〃	〃	
13	운영지원과장	김성철	〃	〃	

나. 산하기관 : 6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 장	김삼화	2025.11.4.(화) 11:00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2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원 장	신보라	”	”	
3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이 사 장	손연기	”	”	
4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이 사 장	한정원	”	”	
5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이 사 장	박구연	”	”	
6	양육비이행관리원	원 장	전지현	”	”	

2. 참고인(4인)

연번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시	출석장소	신문요지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비고
1	정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성평등 가족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성범죄 피해자 권익 관점에서 본 법률지원 문제	
2	이나영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관련	
3	백호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	”	서울교통공사 내부 성범죄 대응 관련	
4	김종숙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정책 이관 관련	

VI. 주요감사 실시사항

1. 성평등가족부

가. 성평등정책

-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더 크고 역차별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였는데, 구조적 성차별 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체 부처로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의 본질에 혼선이 없도록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기능과 남성 역차별 문제 대응의 균형을 위한 보완적인 설계가 필요함.
- 최근 2030세대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젠더갈등 관련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청년 토크콘서트, 간담회 등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폐지된 것은 성평등가족부의 독립성·전문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청년 주도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복원·강화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정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성형평성기획과와 성평등정책과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성형평성기획과의 구체적인 목표 및 업무 범위와 남성 역차별 이슈에 대한 관점 및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고용평등정책

- 중앙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0%인 기관이 9개, 10% 미만인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별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이 낮고,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도,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 고용평등정책을 담당할 인력으로 성평등가족부가 할당한 인원이 7명에 불과하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노동정책의 기획과 수립·집행, 근로감독 등 행정집행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성평등가족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성명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등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받은 사무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관받은 사무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 고용평등정책 사무를 성평등가족부 자체의 고용평등 전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가 고용노동부의 임금분포공시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가 2025. 9. 성별임금격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현상 파악에 그치고 원인 분석은 부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실제로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가족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면 시정조치로 연계할 법적 근거 등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임금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직종·재직기간별 임금 수준을 교차 집계하여 공시하고, 채용·승진·교육 같은 과정지표까지 포함해 제도에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안전인권정책

(성희롱·성범죄·폭력피해이주여성 관련 정책)

- 2025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금지한다고 사업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구제에 체류 자격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거나 지침을 불합리하게 개정하는 문제가 있음.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발생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데 제3의 기관이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은지 및 현재 사건이 발생한 기관(국가와 지자체, 학교, 민간기업 등)에 따라 신고 센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기관에서 신고 처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및 매뉴얼에 허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신고 통계에서 제출 시기별로 동일 기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상이하게 나타나 통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집계 기준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매뉴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공공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기관 내의 어떠한 규정도 기관장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거나 “기관 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외부기관을 통한 처리 취지와는 별개로 기관장에 대한 내부 규정 적용을 전면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포함한 매뉴얼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치 후 사건처리 및 통보,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청에 대해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일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경각심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징계 등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성폭력·성희롱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그 이유로 보임.
- 비동의간음죄 도입(강간사각지대법) 등 핵심적인 성평등 과제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니어도 앞장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구조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예산소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폭력피해자법률서비스 예산 추가 확보 등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운영비와 지원비율이 낮아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운영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개선이 필요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쉼터에 입소한 후 체류자격 연장 및 귀화절차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와 두 부처간 공동 매뉴얼 제정 또는 이주여성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 여자친구나 배우자 등의 얼굴을 AI로 합성하여 나체 피규어로 제작하는 등 신종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바, 피규어처럼 사물로 인식되는 합성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및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연령확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놀자’라는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에서 나체피규어 등 신종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을 계속 업로드 하고, 중앙디성센터가 삭제요청해도 도메인만 변경하며 계속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불법사이트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과정에서 생긴 공백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요구 시정건수 881건 중 단 1건도 조치가 안 되었고,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에서 해당 위원회 파견 인력을 받아도 현재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이는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I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으나 n번방과 유사한 딥페이크 범죄방이 아직 성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현재 불법 성인물이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를 우회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가 해외 플랫폼 변화 양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해야 할지 총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신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증원 규모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시·도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역디성센터)의 근무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1억이 안 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디성센터의 운영 역량 및 예산 확보 수준의 편차가 피해자 지원의 지역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력, 예산, 시설물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에서 쓰는 IP카메라에서 사생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빠져 있는바, 보다 앞장서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보호시설 확충, 입소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해자의 구금·석방·출소 정보를 제공하고 이마저도 훈방 등 미입건 사건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처럼 자동통지제도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망이나 심각한 살해 사건 사례는 철저하게 분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건수가 하루에 평균 400건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경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1,400여건 중 약 400건 정도만 검찰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폭력이 근절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길 바람.
-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하여 상담 지원, 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료 법률 지원 외에는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스토킹에 대하여 법률 상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단계별로 취하는 구조인데,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가 사라지나 잠정조치의 시작시기가 법원의 결정시점이 아니라 가해자로의 고지시점이라 그 짧은 공백기간에 2차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긴급응급조치 효력상실시점을 결정시점이 아니라 고지시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나 탈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가해자나 업주 등에게 주소 노출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법정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주민등록지로 등록을 하여 신분이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주민등록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민센터가 피해자의 입소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

- 최근 온라인에서 AI를 활용하여 만화나 웹툰 형식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알선하는 불법 콘텐츠가 양상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통적인 중개 행위 중심으로 규율되어 법적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후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 산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인신매매 예방·신고·보호·수사처별 등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여성 납치 및 감금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긴급보호,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서울시 10대 여성청소년을 위한 나눔봄 센터가 폐쇄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강지원 공백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대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에서 책임지고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현황 등 정보를 연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해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의무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캄보디아 인신매매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에서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처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지표만 공문으로 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공문 발송 이후 협조 상황 점검 미비로 인해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실제 피해자 지원 경로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조체계 구축 및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캄보디아 사건처럼 범죄 피의자이면서 감금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명확한 사례판정 원칙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함.
- 성매매 집결지 철폐로 생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상담소 상담, 자활센터 연계, 직업 훈련 및 공동체 복귀 등 제도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하여 성북구 같은 폐쇄 미완료 지역에 TF를 구성하여 재유입 방지 및 자활 체계 강화를 총괄하는 모범사례 발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가 성매매 의심 업소에 출입·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군사정권에서 윤락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폭행한 여성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고 올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게 맞음.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폐에 대한 입장 질의 및 향후 여성 인권유린 역사기록 보존과 기념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국 여성인권 기념공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 부정,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이를 근절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리박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고 일본군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외교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무엇인지 여부 및 이견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이 없다면 조속히 통과 되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당부함.
- 2024년 6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 만족, 공식 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2년 이내에 일반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조치를 제출해야 하나 권고가 나온지 1년 반 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흡한 수준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정부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함.
-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 설립·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질의함.
-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남은 잔여재산 60억원에 대한 처분방안을 질의함.

(아동·청소년 성보호)

- 디지털성범죄 가해자·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므로, 디클 홈페이지에 초·중등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국 57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리박스쿨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교육 전문기관’ 대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 종사자 자격, 교육·평가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며, 컨트롤타워를 하는 중앙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의 교육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예산지원 중단 및 차량 노후화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광역 단위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단계별 확충 계획 및 지역간 교육 접근성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는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나 센터 상담 담당자는 2~3명에 불과하고 3년 단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상담원 확충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화가 필요함.

라.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22~2023년도에 추진한 ‘국외역사문화체험 활동’은 청소년의 대한민국 역사 인식과 국제사회 이해,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기여해 왔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업을 신규 증액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여성혐오·인종차별 등의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데, 3년 주기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회 현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청소년이 무인 전자담배점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흡연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디지털 중독의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이 도박사이트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대 청소년 도박중독은 2022년 104명에서 2024년 669명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나, 조기발견과 실태조사 체계가 미흡하여 예방·치유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대와 근본적인 예방·회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3년 25명, 2024년 33명 참여에 그쳐 지원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발굴을 위한 대안적 접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 공간이 청소년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로 떠오르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식약처나 검·경 등과 함께 유통 차단 및 예방 교육·재활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AI 유해 환경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AI 과의존과 자해·범죄 정보 접촉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법·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협력 등 사전적 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AI 챗봇·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인 콘텐츠 노출, 감정 의존,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정책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AI 이용 실태조사, 연령 확인 강화,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2020~2025년 사이 약 5배 증가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학교·가정·지역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실태조사·DB 구축 및 고위험 지역 집중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2025년부터 변경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기준을 2024년에 평가받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약 10% 정도로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동반자의 이직률이 최근 3개년 평균 약 40%로 높고, 정규직이 5.6%에 불과하므로 청소년 동반자 제도의 고용 안정화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소년 우울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2021년 대비 2024년에 1.5배 증가하였으나 상담인력은 부족하므로 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청소년에게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와 달리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일부 시·도에서만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제도는 보호종료·위기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연령 기준(19~24세)의 경직성으로 주거·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령 기준 완화, 자립주택 확대, 자립지원수당 현실화, 사례관리 인력 확충을 통해 종합적·연속적 지원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미성년 청소년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18세 이상 미성년 퇴소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년에 준한 주거계약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등 유사직군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처우와 근무 여건은 열악하여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체계 개선, 인건비 기준 상향 등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통직무교육 및 행동중재 역량 강화 교육과 같은 실질적 전문성 강화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수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조직위 최종실적보고서는 폭염에 신속히 대응했다며 문제점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으나, 2025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보고서 허위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작성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기타)

-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강의에서 넥스트클럽이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허위 홍보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필요한 행정조치 등 적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마. 가족정책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 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이후에도 일정 시간 이후 아이돌보미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봄인력의 복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유인책 마련 및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이돌보미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보다 돌봄 전문성이 높음에도 필수 교육시간은 길고 급여수준은 낮아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므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및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부족으로 부모의 경력단절,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바,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제 실현 및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유인 방안 마련,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가구에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연계가 필요하며, 긴급돌봄, 질병아동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긴 대기시간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지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아이돌보미의 야간돌봄, 긴급돌봄 제도의 경우 매칭비율이 낮게 나타나 필요한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안전관리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이돌봄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음에도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공급 부족과 예산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는바, 아이돌보미의 이직 방지를 위해 장기근속수당 도입 등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가족 지원)

-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가구가 현재 전체 가구의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음식 준비 등 건강관리의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취약·위기가족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등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이중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 주체들이 여가 시간 부족,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의료비·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지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실태조사시 이중돌봄에 대한 문제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홈캠, 보안캠 등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 대상 예방 교육, 안내 공문 송부 등 가족 보호와 위험성 경고에 성평등 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가족친화환경조성)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평가 방식 중 정성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퇴출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환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실적 관리 및 부정수급 원인에 대한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 등 지원)

-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신고 누락, 부모 정보 불완전에 따른 출생통보 처리 어려움 등으로 의료·복지·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위한 출생등록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코피노 등 해외거주 한국계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친자 인지 청구, 국내 체류자격 부여, 양육비 청구 지원, 의료·복지·교육 등 지원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결혼중개업 관리)

-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는 여성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온라인 광고, 성상품화가 우려되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령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적발 이후 경찰 수사의뢰나 방심위의 콘텐츠 차단 등 조치가 미비한 사유를 파악하고, 경찰 및 방심위와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리)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 서울에 하나의 본원만 두고 있고, 소송 담당

변호사의 수가 적어 서울, 인천·경기 지역에만 양육비 청구를 위한 직접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가 필요함.

바. 기획조정실 등

- 국정감사 보고 자료 등에 과도한 종이 사용을 지양하고 ESG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장의 임면권이 장관에게 있음에도 대통령직과 장관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3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고, 산하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제보되었는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의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성평등 업무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비취질 우려가 제기된바, 가족 기능을 포함한 부처 전체 역할이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하고, 조직 확대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처 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이에 따른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인력 증원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직무정지 중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임명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원들에 대한 정치성향 강요,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익명게시판 제보자에 대한 색출 시도 등의 의혹 제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보가 있는바, 감찰 착수 등 성평등가족부의 진상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 인사가 있었으나, 한정원 이사장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임명 절차 관련 자료 및 채점자료 등을 의원실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APEC 등 주요 국제회의 정상선언문에서 ‘성평등’ 등 핵심 가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요구됨.
- 성평등가족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오해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별로 편재되어 있어 전문부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 체감 높은 핵심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의 업무가 과중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디성센터 인력이 현장에선 20명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나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1명 증원만 반영되었으므로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는 사람의 눈과 손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업무량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임. 단기적으로 종사자들의 인력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AI기반 자동 탐지·삭제 체계 구축 등 중앙디성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 현재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소속 부서 형태로 존재하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인력 및 재정이 불안정해 역사적 문제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함.

V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성평등가족부

가. 성평등정책

-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 정책과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성형평성기획과의 구체적인 목표 및 업무 범위 등을 설정할 것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체 부처로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30세대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젠더갈등 관련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청년 토크콘서트, 간담회 등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나. 고용평등정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이 낮고,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 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공공부문의 성별대표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고용평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수행 관련 전문기관 육성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또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등 수행 역량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임금분포공시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임금격차 발표가 현상 설명에 그치고 있어 남녀 간 임금격차 확대라는 결과만을 부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통신업·금융업 등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적 근거 및 제재방안 등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임금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직종·재직기간별 임금수준을 교차 집계하여 공시하고, 채용·승진·교육 같은 과정지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안전인권정책

(성희롱·성범죄·폭력피해이주여성 관련 정책)

- 2025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구제에 체류 자격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주체나 신고절차의 적정성 및 각기관의 매뉴얼 유무, 사건처리 결과 공개의 실효성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치료회복 현실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에서 나체피규어 등 신종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을 계속 업로드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요청해도 도메인만 변경하며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사이트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도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정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보호시설 확충, 입소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복 폭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통지제도 도입 법안 발의 시 성평등가족부의 협조와 친밀관계를 기반해서 이루어진 사망이나 심각한 살해 사건 사례 분석 제도 도입을 모색할 것
- 스토킹 피해자 보호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시점을 잠정조치 결정시점이 아니라 고지시점으로 조정하는 안을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나 탈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주소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하지 않는 법정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주민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행정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소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인신매매 예방·신고·보호·수사처벌 등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것
-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피해 등 해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의무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성매매 집결지 철거로 생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상담소 상담, 자활센터 연계, 직업훈련 및 공동체 복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 최근 온라인에서 AI를 활용하여 만화나 웹툰 형식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알선하는 불법 콘텐츠가 양산(量産)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 10대 여성청소년을 위한 나는봄 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 공백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기청소년의 건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2024년 6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모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성보호)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므로 디클 홈페이지에 초·중등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내실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명시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중앙지원기관을 설립하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원 확충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라.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 2022년 및 제2023년에 추진된 국외역사문화체험활동 사업은 청소년의 역사 인식과 국제사회 이해,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기여해 왔으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청소년 사이에서 혐오·극단화 등의 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으로 도박중독 및 불법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디지털 공간을 통한 청소년 마약 유통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식약처나 검·경 등과 함께 유통 차단 및 예방 교육·재활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등도 확보할 것
- AI 챗봇·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으로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 노출, 자해·범죄 정보 접촉, AI 과의존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AI 이용 실태조사, 법·제도(연령확인 강화 및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급증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학교·가정·지역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실태조사·DB 구축 및 고위험 지역 집중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체에 참여할 것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2025년부터 변경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기준을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학교 밖 청소년등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할 것
- 청소년 동반자의 이직률이 높고 정규직 비율이 낮으므로 청소년 동반자 고용 안정화 방안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 우울증 문제가 심각하므로 상담인력 등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청소년에게 적절한 상담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일부 시·도에서만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제도는 연령기준(19~24세)의 경직성으로 주거·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령기준 개선, 자립주택 확대, 자립지원수당 현실화, 사례관리 인력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미성년 청소년은 주거 지원이 필요하므로, 18세 이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년에 준한 주거계약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급여체계 개선, 인건비 기준 상향,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통직무교육 및 행동중재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예산을 확보할 것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에 폭염 대응 문제를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있으므로, 작성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고 경위에 대해 의원실로 보고할 것

마. 가족정책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도입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지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가족지원)

- 경제적 어려움, 건강관리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 대상 예방 교육, 안내 공문 송부 등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양육비 청구를 위한 직접소송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를 검토할 것
- 가족실태조사시 여가시간 부족, 의료비·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이중돌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할 것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환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실적을 관리하고 부정수급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가족친화환경조성)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식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할 것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퇴출 등 관리를 강화할 것

(다문화가족지원)

-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조례의 폐지를 권고할 것
-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광고, 성상품화 및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이후 수사의뢰나 광고 차단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방심위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
- 이주배경 아동이 의료·복지·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바. 기획조정실 등

-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장의 임면권이 장관에게 있음에도 대통령직과 장관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3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는바, 임명 절차 등을 조사할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원들에 대한 정치성향 강요,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익명게시판 제보자에 대한 색출 시도 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 성평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처 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인력증원 및 예산을 확충할 것
- APEC 등 주요 국제회의 정상선언문에서 ‘성평등’ 등 핵심 가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종사자들의 인력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AI기반 자동 탐지·삭제 체계 구축 등 중앙디지털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할 것